



제 435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조합 이사장 및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임제한 등〉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524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조합 이사장 및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임제한 (안 제52조제2항·제3항 및 제123조제2항)	3
2. 회장 선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의무화 (안 제123조제6항 개정 및 제7항 삭제)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홍배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17.
3. 회부연월일 : 2026. 3.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면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연임 후 일정 기간의 공백을 두고 다시 선출되는 경우는 제한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 인물이 장기간 회장직을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협동조합 회장의 장기재임은 조직 운영의 폐쇄성과 권한 집중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중소기업을 대변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협동조합 운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관리 과정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선택적 위탁으로 인해 선거의 투명성과 건정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강화함으로써 조직의 선순환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고 (안 제52조

제2항, 제123조제2항 개정) 임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중앙회의 대내외적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123조제6항 개정, 제7항 삭제).

Ⅲ. 검토의견

1. 조합 이사장 및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임제한

(안 제52조제2항·제3항 및 제12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2조(임원의 임기) ① (생략)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u>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하고, 임원의 증원으로 임기 동안에 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출 당시 다른 임원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u>≤후단 신설></u> 다만, 상근 이사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제52조(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1회에 한정하여 중임할</u> ----- --. ③ ----- ----- ----- ----- -----, 이 경우 보궐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는 <u>제2항에 따른 중임 제한 횟수를 산정</u> <u>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u> ----- -----.
④ . ⑤ (생략) 제123조(임원의 선임) ① (생략) ②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u>연임할 수 있다.</u> 이 경우 <u>회장은 제1항 본문의 정회원 대표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u>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23조(임원의 선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중임할</u> -----, ----- <u>보</u> <u>궐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중임 제한</u> <u>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회장은---</u> ----- -----.
③ ~ ⑦ (생략)	③ ~ ⑦ (생략)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함)의 경우 2회, 중소기업중앙회장(이하 ‘회장’이라 함)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이사장 및 회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각각 개정하여 1회에 한정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연임(連任)”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임기가 끝난 후 곧바로 새로운 임기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중임(重任)”은 임기가 끝난 이후 또는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하여 그 자리에 임용되는 것으로, 임기 사이에 일정한 간격이 있는 경우라도 다시 같은 직책을 거듭하여 맡는 경우 중임에 해당함.

따라서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연속하여 해당 직책을 맡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연속하지 않고 임기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책을 맡는 것이 허용된다고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임기 사이에 일정한 간격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직책을 다시 맡는 것이 제한되므로, 중임제한이 연임제한보다 더 엄격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즉, 개정안은 이사장 및 회장의 재선출을 현행보다 엄격하게 제한하여 이사장 또는 회장이 연임 후 간격을 두고 재선출되어 장기적으

로 재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같은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설립하는 자조조직인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먼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이사장 및 회장의 연임제한 규정의 연혁을 살펴보면,

현행법에 따른 회장의 연임제한 규정은 2006년 4월 법률의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당시 법률의 개정 취지에 따르면 회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여 회장선거로 인한 조직의 갈등을 줄이고 책임경영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¹⁾

한편, 이사장의 연임제한 규정은 2018년 3월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최초로 도입되었는데, 당시 자조조직인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자율적 임원선출의 원칙이 지켜질 필요가 있으나, 특정 임원이 장기간 연임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사조직화되거나 폐쇄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다른 협동조합 관련 법률의 입법례와 같이 이사장의 연임을 2회(최장 12년)까지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음.²⁾

1) 산업자원위원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139호, 김교홍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05. 11, pp.15~16.

2) 2017. 7. 25. 제20대 국회 제352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p.5.

또한, 다른 법률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와 유사한 성격의 조합의 이사장(조합장) 및 조합 중앙회장의 연임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현행법과 유사한 구조의 연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다만, 농협중앙회장과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경우 중임을 허용하지 않고, 수협중앙회장의 경우 연임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조합 이사장(조합장) 및 중앙회장 연임 관련 입법례

구 분		임기	연임여부	근거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4년	2회 연임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제1항
	신협중앙회장	4년	1회 연임	「신용협동조합법」 제72조제7항
	농협조합장	4년	2회 연임	「농업협동조합법」 제48조제1항
	농협중앙회장	4년	중임 불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30조제5항
	수협조합장	4년	2회 연임 (비상임 1회 연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0조제1항
	수협중앙회장	4년	연임 불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4조제5항
	산림조합장	4년	2회 연임 (비상임 제한없음) ³⁾	「산림조합법」 제38조제1항
	산림조합중앙회장	4년	1회 연임	「산림조합법」 제104조제4항
	지역금고 이사장	4년	2회 연임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3항
	새마을금고중앙회장	4년	중임 불가	「새마을금고법」 제64조의2제5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4년	2회 연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2조제2항
	중소기업중앙회장	4년	1회 연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3조제2항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① 특정 임원의 장기간 재임에 따른 조직 내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연임제한 규정이 도입

3)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에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6년 5월 7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된 점, ②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공공성으로 인하여 다른 경제 단체들⁴⁾과는 달리 유일하게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유관단체⁵⁾로 지정·고시하고 있다는 점,⁶⁾ ③ 공공성을 가진 중소기업중앙회 조직의 선순환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중앙회장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중임을 제한하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다만, 협동조합 이사장의 중임제한의 경우 협동조합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최근 협동조합 이사장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부족 및 구인난이 발생하고 있는 점⁷⁾ 등을 감안할 때 연임 제한 규정을 강화하여 1회에 한정하여 중임 제한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4)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5)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공성이 높은 단체의 임직원에게 재산등록, 재산공개 의무 등을 부여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유관단체를 지정·고시함.

6) 6개 경제단체 비교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총협회
법정단체여부	○ 중기협동조합법	○ 상공회의소법	○ 중견기업법	×	×	×
단체장 임기	○ 4년	○ 3년	×	×	×	×
연임·중임 제한	○ 1회연임	○ 1회연임	×	×	×	×

7)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최근 조합 이사장 선거의 경우 이사장 후보자 부족으로 인하여 추대에 의한 선거(1인 출마+현장추대) 비율이 평균 90%를 상회하고 있음.

최근 5년간 中企협동조합 이사장 선출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1~3			합계		
	선거	추대	계	선거	추대	계	선거	추대	계	선거	추대	계	선거	추대	계	선거	추대	계
횟수	9	176	185	32	247	279	19	228	247	29	188	217	5	68	73	94	907	1,001
비율	4.9	95.1	100	11.5	88.5	100	7.7	92.3	100	13.4	86.6	100	6.8	93.2	100	9.4	90.6	100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따라서 이사와 회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1회에 한정된 중임제한 규정으로 강화할지 여부는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자율적 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이 가지는 임원 선출의 자율성 간의 균형 필요성, 당초 법률에서 이사와 회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게 된 경위와 취지, 유사 입법례 및 관련 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이사와 중앙회 회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대표발의, 제2215822호)과 이사에 대하여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을 두 차례 중임만을 허용하도록 개정하려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제2217290호)이 각각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바, 개정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회장 선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의무화

(안 제123조제6항 개정 및 제7항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123조(임원의 선임) ① ~ ⑤ (생략) ⑥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 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회 회장 선거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의 단속과 조사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제123조(임원의 선임) ① ~ ⑤ (생략) ⑥ ----- ----- ----- -----위탁하여야 한다. <삭 제>

현행법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관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정관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⁸⁾

8) 역대 회장 선거 위탁 현황

선거연도	위탁여부	비 고
2007(제23대)	○ (최초)	
2011(제24대)	×	
2015(제25대)	○	
2019(제26대)	○	
2023(제27대)	×	※ 중기부는 선관위 위탁을 권고하였으나 중앙회는 단독 출마를 이유로 자체 관리 결정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재정리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해당하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보고를 받고 검사를 실시할 권한 등을 가지고 있고,⁹⁾ 중소기업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실질적인 실시 주체¹⁰⁾라는 점에서 회장의 선출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음에도 회장 선거 시 과열경쟁과 흑색선전 등의 논란이 반복되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무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¹¹⁾

이에 개정안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관리를 의무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이라 함)」 제7장은 의무위탁선거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의무위탁선거와 현행법에 따른 임의위탁선거에 적용되는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2조(권한의 위탁 등) ② 주무관청은 법 제136조에 따라 지방조합, 사업조합, 전국조합 및 연합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회의 회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29조에 따른 결산 관계 서류의 수리(受理)
2. 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수리
3. 법 제130조제3항에 따른 규약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의 승인
4. 법 제131조에 따른 업무와 회계의 검사

1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4조(사업 조성) 정부는 중소기업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중앙회를 통하여 실시한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연합회 또는 조합, 사업조합을 통하여도 할 수 있다.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위탁선거가 이루어졌던 제26대 회장 선거에서 선거운동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고발 2건, 경고 2건 등 총 4건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김기문 후보자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 당선”, 2019. 2. 28)

위탁선거법상의 의무 · 임의위탁선거 비교

구 분	의무위탁선거 (위탁선거법 적용)	임의위탁선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중앙회 정관 적용)
기간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방법	▪ 공보, 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컴퓨터통신, 명함, 선거일소견발표	▪ 벽보, 공보·인쇄물, 연설·토론회, 전화·컴퓨터통신
금지	▪ 누구든지 • 기부행위(재임중 기부도 금지) • 축의·부의시 개인명의금지 • 호별방문 금지 ▪ 임직원 •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 기획 및 실시 • 지지도 조사 및 발표	▪ 누구든지 • 금품, 향응, 공사(公私)의 직 제공 • 거짓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 임원이 되려는 자 •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또는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벌칙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금품, 향응, 공사(公私)의 직 제공시(제58조) • 기부행위 위반한 자(제59조) •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제61조제1항) • 선거인명부를 거짓으로 작성(제63조제2항) ▪ 5년이하 징역 5백만원~5천만원 벌금 •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제61조제2항)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후보자 비방죄(제62조) • 선거운동의 방법 등 위반자(제66조제2항)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선거인명부 거짓 사위 등재(제63조제1항)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금품, 향응, 공사(公私)의 직 제공시 (제137조1항)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호별방문, 거짓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및 선거운동방법 위반시 (제137조2항)

구 분	의무위탁선거 (위탁선거법 적용)	임의위탁선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중앙회 정관 적용)
	• 신분 위조 등 부정 투표자(제64조 제1항) • 1년~7년 징역 1천만원~7천만원 이하 벌금(제65조) • 폭행, 협박, 유인등 불법 체포·감금자 • 폭행, 협박 등 선관위 소요·교란자 • 선거인명부, 관리사무 은닉·파손·훼손자 ※ 공소시효 : 선거일로부터 6개월	• 1년~7년 징역 1천만원~7천만원 이하 벌금(위탁선거법 제65조 적용)¹²⁾ • 폭행, 협박, 유인등 불법 체포·감금자 • 폭행, 협박 등 선관위 소요·교란자 • 선거인명부, 관리사무 은닉·파손·훼손자 ※ 공소시효 : 선거일로부터 6개월
당선 무효	• (당선인)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제70조제1호) •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제70조제2호)	

참고로, 현재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은 중앙회장뿐만 아니라 이사장(조합장) 선거에 대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¹³⁾ 「신용협동조합법」은 중

12) 제57조(적용 제외) ①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 외의 위탁선거에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5조, 제66조제2항제12호, 제68조제1항·제2항제2호 및 제4항·제5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④ 지역농협은 제4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⑧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4조(선거관리위원회) ② 지구별수협은 제4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

양회장과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조합의 이사장 선거에 대하여 선거관리 의무위탁 규정을 두고 있음.¹⁴⁾

즉, 개정안의 취지를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타 유사조합과 같이 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함으로써 「위탁선거법」에 따른 제재수단을 적용하여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 의무위탁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134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⑦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산림조합법」
제40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② 조합은 제3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104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⑦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새마을금고법」
제23조의2(선거관리의 위탁) ① 지역금고는 이사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⑥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8조제10항 본문, 같은 조 제11항, 제19조제8항,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항 제11호의2·제11호의3·제12호·제12호의2·제13호·제13호의2·제14호·제15호,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0항 본문,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금고”는 “중앙회”로, 제20조제3항 후단, 제22조의2제6항, 제23조의2 및 제27조제1항 중 “이사장”은 “회장”으로, 제23조의2 중 “지역금고”는 “중앙회”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25조제6항 중 “이사장”은 “회장과 상근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본다.

14)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② 조합은 제27조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 따라 선출하는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조합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출하는 이사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⑨ 중앙회는 제7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출하는 중앙회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선거 적용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제4조와 선거운동 관련 적용 범위를 규정한 제22조¹⁵⁾에 중소기업중앙회가 포함될 수 있도록 「위탁선거법」 제3조제1호제가목¹⁶⁾에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하도록 「위탁선거법」의 개정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임.

아울러, 회장 선거를 「위탁선거법」에 따른 의무위탁선거로 변경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제재수단을 적용하는 경우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선거 관리 관련 준용규정¹⁷⁾은 불필요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타

15) 「위탁선거법」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위탁선거에 적용한다.

1. 의무위탁선거: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와 같은 조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

제22조(적용 제외)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 외의 위탁선거에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공공단체등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에 따른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는 제외한다)에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를 적용한다.

16) 「위탁선거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단체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다.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단체[「공직선거법」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에 따른 당내경선 또는 「정당법」 제48조의2(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에 따른 당대표경선을 위탁하는 정당을 제외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체로서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려는 단체

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3조(임원의 선임) ⑦ 제6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회 회장 선거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의 단속과 조사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유사조합의 경우 중앙회장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이 의무화되어 있는 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법정단체로서, 전술한 바와 같이 다른 경제 단체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고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앙회장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더라도 「위탁선거법」이 함께 개정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는 경우 여전히 「위탁선거법」상 임의위탁선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탁선거법」의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위탁선거법」상 의무위탁선거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벌칙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어 위탁단체의 특수성 및 자율성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위탁선거법」상 의무위탁선거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문 의 처
02) 6788-5463